

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3. 18.(월) / 총 3매(본문2)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백현식, 사무관 백병성, 주무관 신성일 • ☎ (044) 201-201-3993, 3996, 4005
보 도 일 시		2019년 3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국토부, 물류분쟁 해소 위한 ‘물류신고센터’ 시범운영 일방적 계약 변경과적 강요 등 피해 예방 위한 전담 창구·60일 이내 결과 회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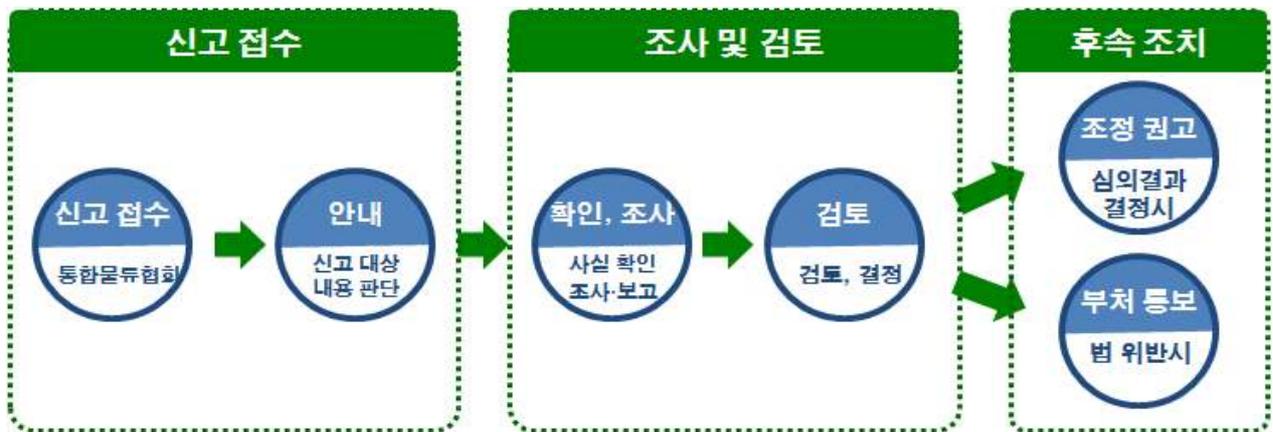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 「물류신고센터」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.
  - 현재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,
  -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.
  - 이를 위해 지난 해 「물류정책기본법」을 개정하여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고센터의 업무,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.
-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▲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, ▲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, ▲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·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, ▲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.

□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(물류정책과)에 설치·운영하게 되며, 신고접수,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.

○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.

- ◆ (신고안내) 대표전화 (☎ 1855-3954)
- ◆ (제출방법) 전자우편(logis112@koila.or.kr) 또는 팩스(☎02-6953-0681)로 제출
  - \* 신고서(물류분쟁신고서) 양식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(<http://www.nlic.go.kr>) 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(<http://koila.or.kr>)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)

○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,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,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.



○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,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(<http://www.nlic.go.kr> 내)도 개설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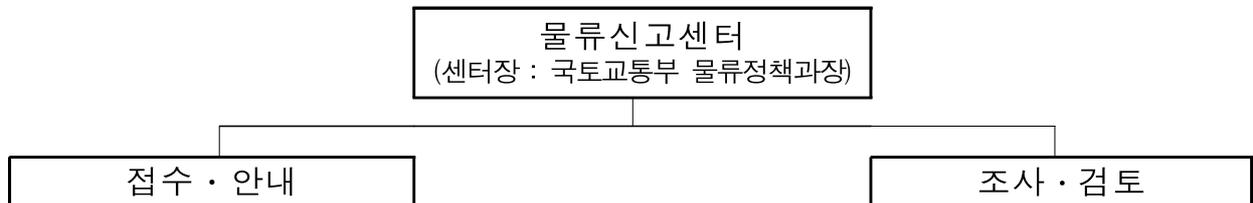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“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,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병성 사무관(☎ 044-201-399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

## 「물류신고센터」 개요

- (추진배경) 불합리한 물류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기업 보호, 동일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시장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조성
- (설치근거)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37조의2(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)
  - \* 물류정책기본법 개정('18.9)으로 물류신고센터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  - \*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('19.3)으로 신고센터 업무, 조직 등을 규정
- (구 성) 「물류신고센터」는 국토교통부(센터장: 물류정책과장)가 총괄, 신고 접수 등 단순 사무는 위탁 운영(한국통합물류협회)



구 분		담 당 기 능	비 고
관리	센터장	• 신고센터 업무·운영 총괄	국토부
신고 처리	접수·안내	• 신고 접수 및 안내(대표전화 설치 운영 등) • 신고자료 관리, 온라인 신고사이트 관리	위탁기관 (통합물류협회)
	조사·검토	• 사실 확인, 의견수렴, 자료수집 등 • 신고내용 검토 및 조정 권고 등 심의 • 결과 회신 등 사후 관리 등	국토부

### □ 신고센터의 주요 업무

#### ①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\*에 따른 분쟁 신고·접수

\* 일방적인 계약변경, 고의적인 단가 정보 노출, 부당한 과적·금전 등 강요,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 반영에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

#### ② 신고 내용의 사실확인, 조사·보고, 이해관계인에게 조정 권고

#### ③ 신고의 내용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통보